

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선거 안내

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및 심판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지침에 의거하여, 제2대 심판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■ 선거개요

- 선출자 :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(1명)
- 선거일자 : 2020. 11. 5.(목) 10:00 ~ 15:00 (예정)
- 선거방법 : 온라인투표(세부사항 추후 공지)
- 선거인 :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에 심판으로 등록된 자 (2020. 10. 12. 기준)

■ 선거일정

구분	일자	비고
· 위원장 선출 공고	2020. 10. 23.(금)	홈페이지
· 후보자 등록	2020. 10. 29.(목) ~ 10. 30.(금)	방문 또는 우편접수
· 입후보자 공고	2020. 11. 2.(월)	홈페이지
· 선거인명부 작성 및 배치	2020. 11. 2.(월) ~ 11. 4.(수)	사무국
· 위원장 선거	2020. 11. 5.(목)	온라인투표
· 당선인 공고	2020. 11. 6.(금)	홈페이지

■ 후보자 자격요건 (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2항에 의거)

- 정기 등록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에 등록된 심판으로서, 최근 3년 내 협회가 주최·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총 4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자

■ 제출서류

1. 심판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
2. 이력서(별지 3호 서식) 1부

■ 제출방법

-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(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140호)

※ 우편접수 시 [2020.10.30.(금) 18시] 까지 사무국으로 도착된 자료에 한해서만 인정

■ 후보자 결격사유

〈 심판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지침 〉

제7조 (위원장 후보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5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
 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 - 다.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6. 국회의원

② 위원장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한다.

대 한 장 애 인 테 니 스 협 회